

신구조문 변경대비표

변경시행일: 2023년 11월 2일

1. 개정 사유

- (1)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2023.11.2. 시행에 따른 일부 개정 사항(2023.8.1.) 반영
- (2) '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업무 및 위반방지 지침' 내 자구수정 등

2. 개정 내용

금융소비자보호규정		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39조(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)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8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·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동 기간 내에 열람·청취토록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·청취하게 하여야 한다.	제39조(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응)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회사는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·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동 기간 내에 열람·청취토록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·청취하게 하여야 한다.	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2023.8.1.) 개정 반영
	부 칙(4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	부칙 신설
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점검업무 및 위반방지 지침		
변경 전	변경 후	비고

<p>제4조(점검 대상 업무) 사전 점검과 자체 점검 대상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2항 각호와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11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개발, 판매,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로 하며, [별표1]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4조(점검 대상 업무) 사전 점검과 자체 점검 대상업무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18조 제2항 각호와 금융소비자보호규정 제1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금융상품 개발, 판매, 사후관리업무와 관련한 업무로 하며, [별표1]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자구수정</p>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1] 점검 대상 업무 및 점검 사항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206 422 938 651"> <thead> <tr> <th>업무단계</th> <th>점검 구분</th> <th>점검사항</th> <th>적정성점검항목</th> <th>점검 시기 or 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사후관리</td> <td>자체점검</td> <td>업무절차 적정성</td> <td>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</td> <td>상시/ [편드작판분기]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무단계	점검 구분	점검사항	적정성점검항목	점검 시기 or 방법	사후관리	자체점검	업무절차 적정성	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	상시/ [편드작판분기]	<p>[별표1] 점검 대상 업무 및 점검 사항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965 422 1697 651"> <thead> <tr> <th>업무단계</th> <th>점검 구분</th> <th>점검사항</th> <th>적정성점검항목</th> <th>점검 시기 or 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판매/운영</td> <td>사전/자체 점검</td> <td>업무절차 적정성</td> <td>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</td> <td>상시/분기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업무단계	점검 구분	점검사항	적정성점검항목	점검 시기 or 방법	판매/운영	사전/자체 점검	업무절차 적정성	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	상시/분기	<p>자구수정</p>
업무단계	점검 구분	점검사항	적정성점검항목	점검 시기 or 방법																		
사후관리	자체점검	업무절차 적정성	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	상시/ [편드작판분기]																		
업무단계	점검 구분	점검사항	적정성점검항목	점검 시기 or 방법																		
판매/운영	사전/자체 점검	업무절차 적정성	상품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 통제 자체 점검리스트 점검	상시/분기																		
<p>[별표2] 인사[전략기획] 판매자격/보수교육/자격 재취득 기준 관리[직판 부서 대상]</p>	<p>[별표2] 인사/평가담당부서 판매자격/보수교육/자격 재취득 기준 관리[직판/방문판매 부서 대상]</p>	<p>자구수정</p>																				
<p>[별지 제2호] 적정성원칙 2. 증권,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</p>	<p>[별지 제2호] 적정성원칙 2. 증권(매도증권 제외), 지식재산권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을 담보로 계약을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</p>	<p>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(2023.8.1.) 개정 반영</p>																				
	<p>부 칙 (2) 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23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부칙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